
경북도청이전신도시(2단계) 건설사업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017. 9.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경상북도 북부권으로 도청을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행정기능, 문화, 산업 및 정주환경이 갖추어진 자족도시 육성에 따른 행정, 교육, 산업이 어우러진 자족적 신도시 건설로 지역 균형발전
-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가 인구 10만명 내·외의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행정기능 이외에 교육, 산업, 레저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 각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적 신도시 건설
- 지역별 특성과 전통을 반영하여 정체성을 경쟁력으로 하는 미래 글로벌 신도시 건설
- 주변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신도시 건설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는 전체면적 10,965,784㎡ 중 단계별 계획에 따라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북도청이전신도시(1단계)는 2012년 6월 28일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고 2012년 7월 31일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2월 1단계 사업에 대하여 공사완료하였음
 - 금회 사업계획은 경북도청이전신도시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함

〈표 1-1〉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단계별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사 업 기 간	비 고
	초 안	본 안	초 안	본 안		
합 계	10,965,784.0	10,965,784.0	100.0	100.0	2010년 ~ 2027년	-
1 단계	4,257,709.1	4,257,709.1	38.8	38.8	2010년 ~ 2015년	기 시행
2 단계	5,441,931.0	5,564,014.6	49.6	50.8	2015년 ~ 2022년	금회 시행
3 단계	1,266,143.9	1,144,060.3	11.6	10.4	2021년 ~ 2027년	향후 추진



(그림 1-1)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단계별 계획도

1.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근거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실시함

〈표 1-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u>사업계획 확정 이전</u> 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u>14일 이상</u>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1.3 사업의 추진 경위 및 계획

가. 추진경위

- 2008.06.09 : 경상북도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경상북도 공고 제2008-398호)
- 2010.01.04 : 도청이전신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구지방환경청)
 -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지정 면적 : 10,965,784m²
- 2010.05.04 : 도청이전신도시 사업대상지 지정 고시(경북 고시 제2010-168호)
- 2010.11.19 : 도청이전신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구지방환경청)
- 2011.08.24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1단계)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회 개최(경상북도)
- 2012.02.29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승인(경북 고시 제2012-62호)
- 2012.06.28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1단계) 환경영향평가 협의(대구지방환경청)
 - ※면적 : 4,897,501m²(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지정 면적 : 10,965,784m²)
- 2012.07.19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 승인(경북 고시 제2012-215호)
 -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지정 면적 : 10,965,784m²

-
- 2012.07.31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1단계) 실시계획 승인(경북 고시 제2012-230호)
※면적 : 4,897,501㎡(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지정 면적 : 10,965,784㎡)
 - 2014.01.15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 협의(대구지방환경청)
※면적 : 4,790,560㎡
 - 2014.03.17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경북 고시 제2014-96호)
※면적 : 4,774,140㎡(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지정 면적 : 10,965,784㎡)
 - 2014.12.24 :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협의요청 관련 의견회신(대구지방환경청)
 - 2015.01.07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경북 고시 제2015-11호)
※면적 : 4,774,140㎡(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지정 면적 : 10,965,784㎡)
 - 2015.07.01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1단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검토 요청 관련 의견 회신(대구지방환경청)
 - 2015.09.04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경북 고시 제2015-291호)
※면적 : 4,727,133㎡(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지정 면적 : 10,965,784㎡)
 - 2015.12.30 :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협의요청 관련 의견회신(대구지방환경청)
 - 2015.12.31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경북 고시 제2015-478호)
※면적 : 4,257,709.1㎡(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지정 면적 : 10,965,784㎡)
 - 2016.02.22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1단계) 공사 완료(경상북도 공고 제2016-288호)
 - 2016.06.08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경상북도)
 - 2016.06.20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경상북도 공고 제2016-939호)
※공개기간 : 2016.06.20 ~ 2016.07.04(14일간)
 - 2016.07.16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안동시 공고 제2016-1227호) ※공람기간 : 2016.07.18 ~ 2016.08.10

- 2016.07.18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예천군 공고 제2016-588호) ※공람기간 : 2016.07.18 ~ 2016.08.10
- 2016.07.26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안동시 풍천면사무소 : 11시, 예천군 호명면사무소 16시
- 2016.11.22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6차) 승인(경상북도고시 제2016-308호) ※교육환경평가 의견반영
- 2017.03.06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및 협의요청
- 2017.08.28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나. 향후 추진계획

- 2017.12.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실시계획 승인(예정)
- 2018.01.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공사착공(예정)
- 2021.03.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준공(예정)

1.4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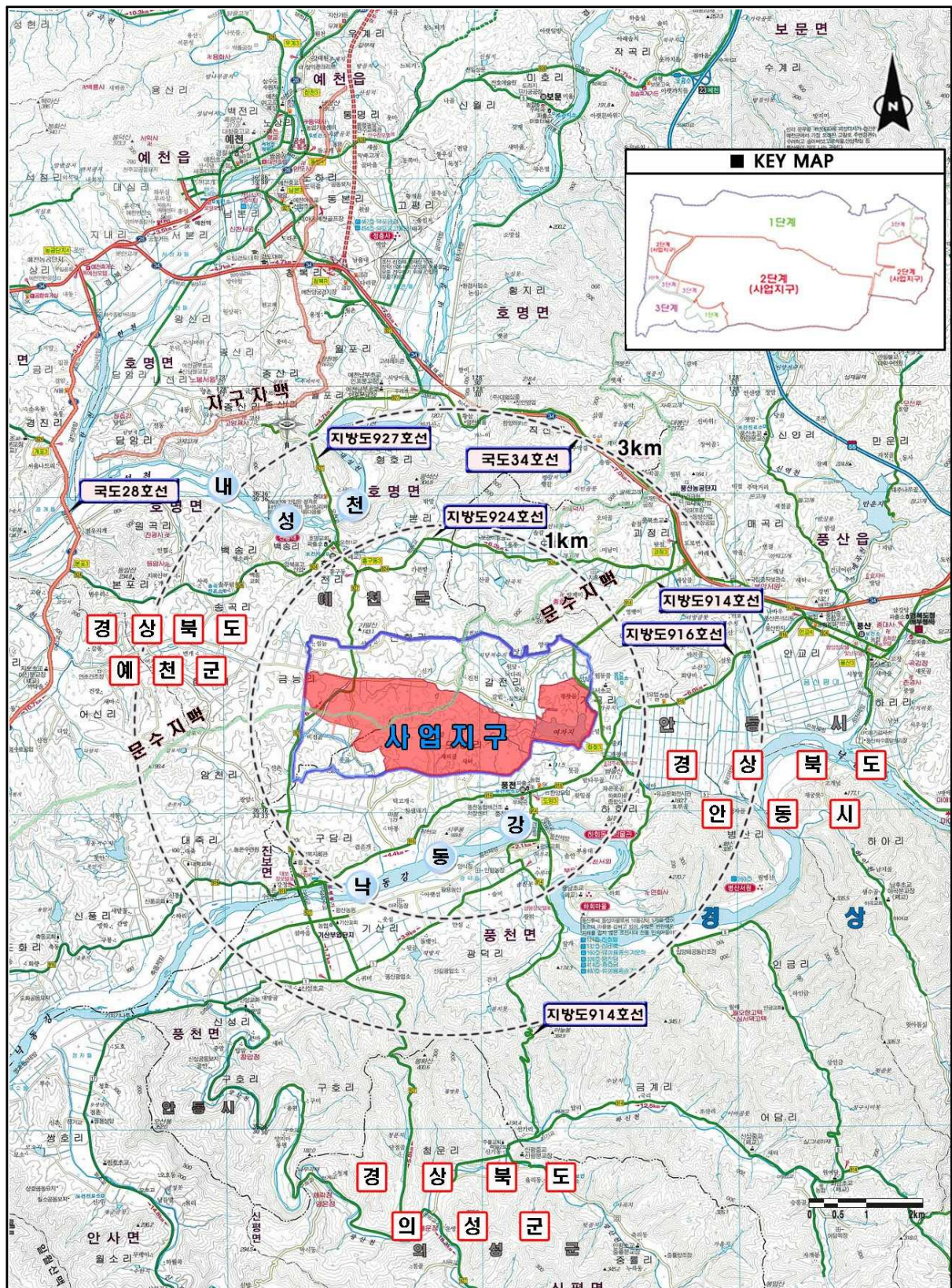
가. 사업개요

- 명 칭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면 일원
- 면 적 : 5,564,014.6㎡(경북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지정 면적 : 10,965,784㎡)
-안동시 : 66.74%(3,713,267.8㎡), 예천군 : 33.26%(1,850,746.8㎡)

〈표 1-3〉 지자체별 편입면적

구 분	총 계	안동시	예천군
면 적(㎡)	5,564,014.6	3,713,267.8	1,850,746.8
구성비(%)	100.0	66.74	33.26

-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 승인기관 : 경상북도
- 협의기관 : 대구지방환경청
- 사업기간 : 2015년 ~ 2022년



(그림 1-1) 위치도

나. 사업의 주요내용

○ 사업면적 : 5,564,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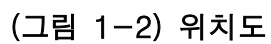
○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2단계)

초 안	본 안
○ 계획세대수 : 29,689세대	○ 계획세대수 : 29,798세대
○ 수용인구 : 74,218인(세대당 2.5인 적용)	○ 수용인구 : 74,491인(세대당 2.5인 적용)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총 계				5,564,014.6	100.0		
주거용지	소		계	1,897,471.0	34.0		
	단 독	소	계	486,739.0	8.7		
		필	지	299,926.0	5.4		
		블	록	186,813.0	3.3		
	공 동	소	계	1,366,141.0	24.5		
		아	과	1,366,141.0	24.5		
근 름 생 활 시 설				44,591.0	0.8		
상업업무 시설용지	소		계	304,128.0	5.4		
	상	업	용 지	92,013.0	1.6		
	특	화	상 업	15,861.0	0.3		
업 무 용 지				196,254.0	3.5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		계	3,337,782.6	60.2		
	공원 · 녹지	소	계	1,650,873.0	29.8		
		근 름 공 원		1,115,556.0	20.0		
		어 름 이 공 원		55,220.0	1.0		
		소 공 원		9,523.0	0.2		
		완 충 녹 지		44,497.0	0.8		
		경 관 녹 지		94,525.0	1.7		
		저 류 수 지		735.0	0.1	(저류조포함시 6,899㎡)	
		저 류 수 지		330,010.0	5.9		
		공 공 공 지		807.0	0.1		
	도 로	소	계	709,476.6	12.7		
		차 동 차 도 로		658,976.6	11.8		
		보 행 자 전 용 도 로		50,500.0	0.9	(저류조 6,164㎡포함)	
	주 차 장			40,524.0	0.7		
	광 장			7,058.0	0.1		
	테 마 파 크			226,030.0	4.0		
	복 합 물 류 센 터			34,000.0	0.6		
	오 수 중 계 펌 프 장			2,908.0	0.1		
	주 유 소			1,205.0	0.1		
	교 육 시 설	소	계	262,112.0	4.7		
		유 치 원		16,078.0	0.3		
		초 등 학 교		113,081.0	2.0		
		중 등 학 교		72,239.0	1.3		
	고 등 학 교			60,714.0	1.1		
	공 공 청 사			1,655.0	0.1		
	복 합 커 뮤 니 티 시 설			10,379.0	0.2		
	문 화 시 설			25,695.0	0.5		
	체 육 시 설			133,203.0	2.4		
	청 소 년 수 름 시 설			12,100.0	0.2		
	중 합 의 료 시 설			165,742.0	3.0		
	중 교 시 설			12,348.0	0.2		
	한 옥 형 호 텔			38,914.0	0.7		
	전 기 공 급 설 비			3,560.0	0.1		
	유 보 지				7,242.0	0.1	
	면				17,391.0	0.3	

8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1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관 행정기관인 안동시, 예천군 주관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가. 의견수렴기관

- 관할시장·군수 : 안동시장, 예천군수
- 승인기관 : 경상북도
- 협의기관 : 대구지방환경청
- 관할유역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관할지역 시·도지사 : 경상북도

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및 공람

1)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 (안동시 공고 제2016-1227호, 예천군 공고 제2016-588호)

- 일간신문 : 서울신문(2016년 7월 16일(토요일))
- 지역신문 : 경북일보(2016년 7월 18일(월요일))
- 안동시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 환경영향평가정보 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2)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16년 7월 18일~2016년 8월 10일
- 공람장소 : 안동시 신도시조성지원팀·풍천면사무소, 예천군 도청이전지원단·호명면사무소(평일 09:00~18:00)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구 분	안동시	예천군
장 소	풍천면사무소	호명면사무소
일 시	2016년 7월 26일(화) 11시	2016년 7월 26일(화) 16시

안동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의 공지사항 목록 화면입니다. 화면 상단에는 '안동시' 로고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슬로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검색창과 언어/화면 설정 버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메뉴는 '민원안내', '시민참여', '안동소개', '시정소식', '안동3.0정보공개', '분야별정보', '문화관광'입니다.

좌측 사이드 메뉴에는 '시정소식'이 선택되어 있으며, 하위 메뉴로는 '안동소식', '공자사랑', '타기관 공자사랑',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입법예고', '분도개장공고', '감사결과', '유관기관소식', '계정정보공개시스템', '입찰정보(일반)', '입찰정보(상하수도)'가 있습니다.

주요 콘텐츠 영역에는 '고시/공고' 섹션이 있으며, '시정소식 > 안동소식 > 고시/공고'의 경로를 보여줍니다. 목록에는 여러 공고가 표시되어 있으며, 2913번 공고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번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2917	안동시 강남동 공고 제2016-20호	2016년 상반기 강남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강남동	2016-07-15	39
2916	안동시 안기동 공고 제2016-11호	2016년 상반기 안기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안기동	2016-07-15	21
2915	안동시 공고 제2016-121호	석유 및 석유3제품료 사면법 위반자 공표	일자리경제과	2016-07-15	62
2914	안동시 공고 제2016-120호	하수회계가치인식설 건조기 선정을 위한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안내 공고	상하수도과	2016-07-15	18
2913	안동시 공고 제2016-123호	경북도청이전신도시(2단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신도시조성지원팀	2016-07-14	79
2912	안동시 공고 제2016-122호	호두나무 일석제품명 발명에 따른 호두나무 이름 및 무역 금지 공고	산림복지과	2016-07-14	29
2911	안동시 송하동 공고 제2016-13호	2016 상반기 송하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사용료,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송하동	2016-07-14	61

안동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의 2913번 공고 상세 화면입니다. 화면 상단에는 '안동시' 로고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슬로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메뉴는 '민원안내', '시민참여', '안동소개', '시정소식', '안동3.0정보공개', '분야별정보', '문화관광'입니다.

좌측 사이드 메뉴는 위 화면과 동일합니다.

주요 콘텐츠 영역에는 '고시/공고' 섹션이 있으며, '시정소식 > 안동소식 > 고시/공고'의 경로를 보여줍니다. 2913번 공고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기간	2016-07-14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공고 제2016-123호	등록일	2016-07-14
담당부서	신도시조성지원팀	담당자/연락처	정선국 / 054-840-5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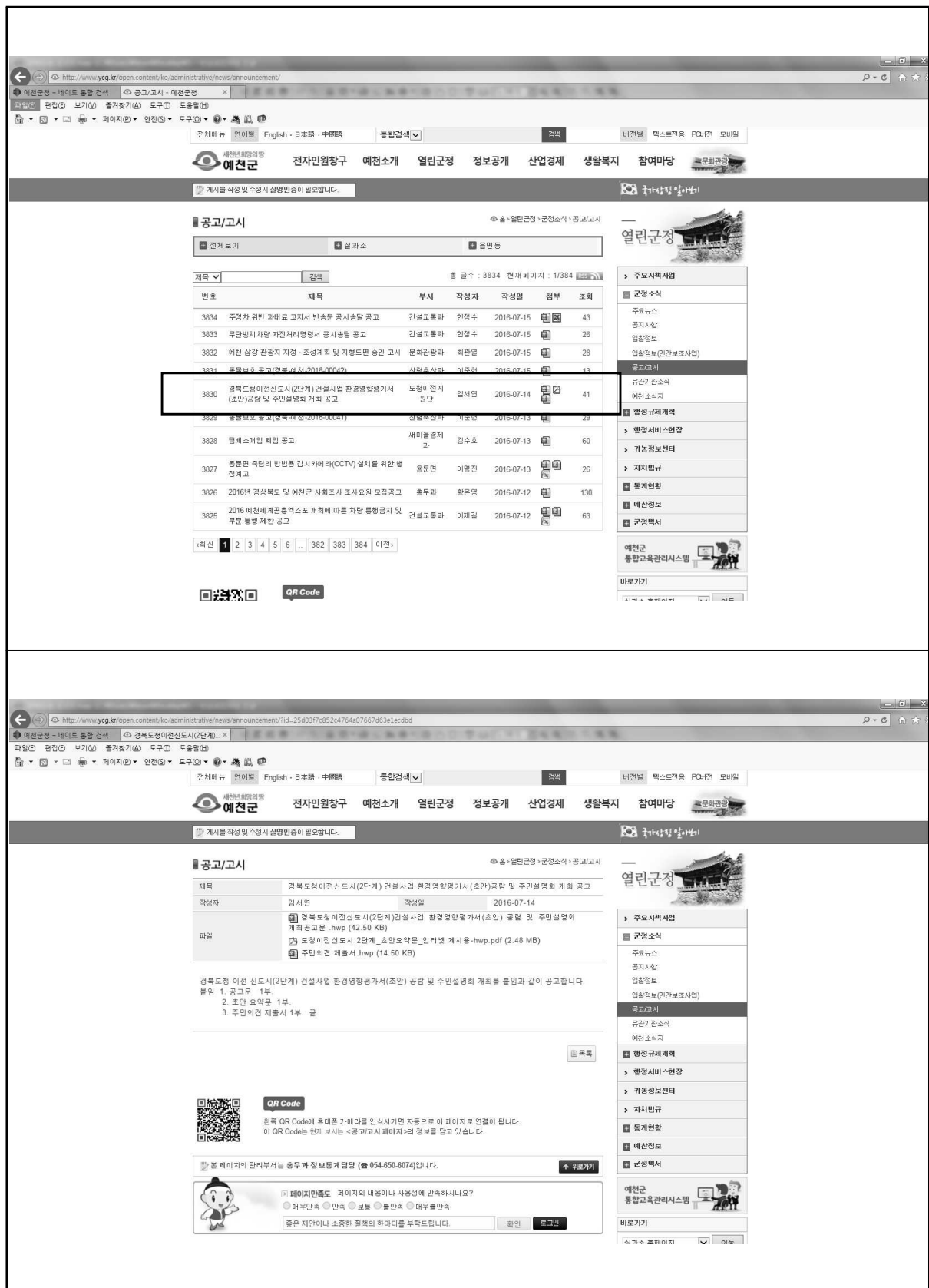
첨부파일

- 공고문.hwp (바로보기)
- 도청이전신도시 2단계 초안요약문.인턴트 게시물1-hwp.pdf (바로보기)
- 주민 의견 제출서.hwp (바로보기)

경북도청이전신도시(2단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코자 불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1부.
3.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

(그림 2.1-2) 안동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 공고



(그림 2.1-3) 예천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cg.kr) 공고



(그림 2.1-4)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eiass.go.kr>) 공고



(그림 2.1-5) 주민설명회 개최 사진(안동시 풍천면사무소)



(그림 2.1-6) 주민설명회 개최 사진(예천군 호명면사무소)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경북도청이전신도시(2단계) 건설사업			
사업장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면 일원			
개 회 일 시	2016년 07월 26일(화) 11시	장 소	풍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	
사 업 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주관기관	경상북도	
일번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서명
1	김종석	한국농악		김종석
2	김대균	풍천가		김대균
3	김해라	간접		김해라
4	김해명	도양		김해명
5	김상우	"		김상우
6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7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8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9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10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11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12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13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14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15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경북도청이전신도시(2단계) 건설사업			
사업장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면 일원			
개 회 일 시	2016년 07월 26일(화) 11시	장 소	풍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	
사 업 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주관기관	경상북도	
일번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서명
16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17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18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19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20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21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22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23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24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25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26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27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28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29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30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경북도청이전신도시(2단계) 건설사업			
사업장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면 일원			
개 회 일 시	2016년 07월 26일(화) 11시	장 소	풍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	
사 업 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주관기관	경상북도	
일번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서명
31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32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33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34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35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36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37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38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39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40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41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42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43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44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45	김우현	풍천향		김우현

(그림 2.1-7)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안동시 풍천면사무소)

한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경북도청이전신도시(2단계) 건설사업				
사업장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빛 애전군 호명면 일원				
개 회 일 시	2016년 07월 26일(화) 16시	장 소	호명면사무소 2층 회의실		
사 업 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주관기관	경상북도		
일번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서 명	
	고 순 화	영			
	강 숙	문			
	이 탈 손	화			
	안 광 숙	"			(인)
	권 광 순	"			(인)
	임 화 조	"			(인)
	장 철 호	"			장철호

2.2 의견수렴 결과

2.2.1 안동시·예천군 의견

－의견없음

2.2.2 대구지방환경청 의견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 및 조치결과	비고
1. 총괄	○본 사업 관련으로 우리청 등과 협의한 사항을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포함하여 작성·협의하여야 함.	○본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포함하여 작성하였음	－
	○금회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수렴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을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도면, 표 등)하여 제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달라진 사항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음	반영
	○본 사업시행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계행정기관 등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협의하여야 함. －관계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수렴·검토하고, 각 항목별 예측결과에 따른 저감방안 및 반영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관계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음	－
	○타법 및 다른 부처소관 법령, 정책 등과 관련한 사항은 본 협의와 별도로 검토·반영하여야 함.	○본 사업의 시행에 있어 타법 및 다른 부처의 법령, 정책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반영하였음	－
2. 세부협의의견 가. 동·식물상	○동·식물상 조사는 동계 및 춘계조사가 실시(95쪽)된 바, 생육이 왕성한 하계 또는 추계에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면밀한 영향예측 및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식물구계 IV등급인 낙지다리가 확인된 지점 및 주변지역 등 사업지구를 충실히 조사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식물의 추가 분포가 확인 될 경우 서식지 보전 등 적정 저감대책 수립 －사업부지 동측 저수지(호민지) 주변지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영향 예측 및 적정 저감대책 수립 －조사지점의 위치 및 결과를 토지이용계획과 비교할 수 있도록 조사지점 및 경로도를 토지이용계획도 등과 연계·도식화 －생태자연도가 흑백으로 제시되어 등급의 구분이 어려운 바, 컬러도면으로 제시	○동·식물상 조사는 동계, 춘계, 하계 등 3계절(4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음 －사업지구 내부 목논에서 낙지다리의 분포가 확인되었으며, 분포지역은 훼손 예상 지역으로 호민지 인근으로 개체를 이식하여 보호할 계획임 －호민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식생조사지점의 추가 등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호민지 주변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훼손금지 등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조사지점위치를 토지이용계획도에 표현하여 제시하였음 －생태·자연도를 컬러 도면으로 제시하였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 및 조치결과	비고
가. 동·식물상	○사업지구 내 기존 녹지를 중심으로 그린 네트워크 구상을 제시하였으나, 기존 농경지가 다수 포함되므로 도시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자연형 수로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대상지 내외를 연결하는 블루그린네트워크 구상을 검토하여야 함.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지구내 생물 다양성 감소 최소화를 위해 사업지구 중앙부의 임야를 중심으로 생태네트워크 연결이 되도록 계획하였고, 1단계 지역내 송평천, 도양천 등을 중심으로 블루네트워크가 연결되도록 계획하였으며, 호민지와 연결되는 블루 네트워크를 계획하였음	반영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수목의 재활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자생수목을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지역에 경관수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사업시행으로 훼손이 예상되는 수목 중 소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의 자생수목 총1,348주(12%)를 이식하여 조경수목으로 활용할 계획임	반영
	○평가서(587쪽)에 제시된 대안별 도면은 사업대상지 내부 토지이용계획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간단하게 작성되었으며, 대안별 비교에 제시된 특징·장점·단점은 해당 근거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적절하게 비교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본 사업계획과 사업대상지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실효적으로 차별성 있는 다수의 대안을 선정·비교하여 생태적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여야 함.	○사업계획과 사업지구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대안을 선정·비교하여 제시하고, 생태적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였음	반영
	○사업대상지 내부에서 삶, 수달, 황조롱이, 새호리기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조사된 바, 해당 법정보호종의 생태 특성 및 아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보전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사업지구내 확인된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보전방안을 수립하였음	반영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달의 서식환경에 예상되는 생태적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달이 주로 이동하는 사업대상지 북측 하천과 서남측 하천 수변으로 충분한 완충녹지대를 확보하여 향후 공사 완료 이후 수달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생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1단계 사업지구내 주요하천변(송평천, 도양천)으로 완충녹지대를 확보하여 수달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적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본 사업지구(2단계)의 공원·녹지계획과 연계하여 호민지와 의료부지에 경관녹지를 확보하여 생태네트워크를 조성하였음	반영
	-사업부지 내부에서 확인된 맹금류의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부 산림식생지역은 맹금류의 먹이원이 되는 소형동물 서식에 적합하도록 조성하는 방안 검토	-사업지구 내부의 산림식생지역은 원형보전하여 맹금류의 먹이원이 되는 소형동물의 서식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먹이원 감소 등의 영향을 저감하였음	반영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 및 조치결과	비고
가. 동·식물상	○사업대상지 내부 산림식생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상 공원녹지계획을 고려할 때 사업부지 내부 도로개설로 인한 생태적 단절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부지 내부에서 삶의 서식흔적이 다수의 지점에서 조사된 바, 사업부지 내부 원형보전녹지 및 조성녹지가 도로로 인하여 단절되는 지점에 육교형이나 Box 터널형 등 충분한 규모의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생태통로 조성계획 수립 타당성과 생태통로 위치 선정 사유 및 조성 규모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사업지구 내부의 원형녹지 및 조성녹지를 연결하는 육교형 생태통로 4개소를 계획하여 야생동물의 단절영향을 저감하였음	반영
	○배수로에 소형동물 탈출을 위한 생태측구를 계획(180쪽)하고 있으므로, 계획한 생태측구는 최대 2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환경부, 2010.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참고	○양서·파충류 및 소형 포유류의 분포 및 이동성을 고려하여 배수로 내 생태탈출로(20m 간격), 미소서식처 설치계획을 제시하였음	반영
	○평가서(106쪽)에 제시된 귀화식물목록에 돼지풀, 애기수영 등 생태계교란식물이 조사되었으나 관리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바, 종별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사 전, 공사 시 및 운영 시의 생태계교란식물 관리대책(제거시기, 제거방법, 확산·재정착 방지대책, 사후 모니터링, 종자오염 사토 처리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12. 「생태계교란생물 자료집」 참고	○돼지풀, 애기수영 등 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대책(제거·확산, 재정착 방지대책 등)을 제시하였으며, 사후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신도시 건설에 따라 다수의 건축물과 도로 개설에 따른 가로등 설치 등 야간조명 증가로 인한 생태계 훼손 및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야간조명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가로등 및 옥외조명 등 야간조명 설치는 최소화하고, UV발생이 적은 광원의 사용과 야간조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방안 강구 －특히, 사업대상지 북측 수계는 수달의 주요 서식지로서 보전 필요성이 높으므로 공사 시 및 운영 시 수달 서식환경을 교란하지 않도록 야간조명 관리계획 수립	○가로등 및 옥외조명 등 야간조명 설치시 UV발생이 적은 광원의 사용, 조명범위, 각도 조절, 전등갓 사용 등의 저감대책을 제시하였음 －사업지구 북측의 수계(송평천)는 1단계 부지로 공사 완료구간으로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	반영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 및 조치결과	비고
가. 동 · 식 물상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추가 반영 - 법정보호종의 서식 · 출현 변화에 관한 조사결과 - 기 협의된 대책 이외에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법정보호종 서식 · 출현 변화에 따른 추가 보전대책 또는 저감대책의 수립 여부 - 녹화(경관녹지, 사면녹지 등) 공정 현황 및 공정률 조사결과 - 훼손수목 이식공정 현황 및 이식공정률 조사결과 - 협의된 생태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현황 및 온전한 기능 수행 여부 조사결과 - 육수생물의 경우, 우기 시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 중 우기 시에는 월 1회 이상 조사 - 생태계교란야생식물을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별도의 조사항목으로 설정하고, 공사 시 분기 1회 이상, 운영 시 분기 1회 이상 조사	○ 법정보호종의 서식 및 출현,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 추가적인 법정보호종의 발견시 추가 보전대책, 녹화공정 현황 등에 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면밀한 사후환경 모니터링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임	반영
나. 대기 질 및 악취	○ 본 사업지구 남측에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자원회수시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하수처리장)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있는 바(203쪽), 이에 대한 대기질 및 악취 영향을 고려하여 본 사업부지 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악취 현황조사 시 사업지구와 다소 이격된 문헌조사 자료가 인용된 바, 적정 지점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면밀한 영향 예측 및 검토	○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인근에서 악취 현황조사를 5개 지점(5개 항목)에 대해 추가조사(2016.9)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배출허용기준(기타지역)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복합악취 3~6, 암모니아 0.01~0.04ppm, 나머지 항목(메틸메캅탄, 황화수소, 스타이렌) 불검출	반영
	-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내 유효연돌높이를 고려하여 본 사업부지 내 건물과 연기충돌 및 간섭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등의 건물 층고 설정 - 환경에너지 종합타운과 본 사업지구 내 주거시설 사이의 차폐역할을 하는 근린공원의 고도를 고려하여 공동주택 층고 설정 -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최대착지농도를 고려하여 주거시설 위치 설정	-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환경영향평가시 본 사업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연기충돌을 검토하였으며, 유효연돌고가 99~384m로 99m보다 높은 건축물이 입지할 시 연기충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주변 공동주택은 99m 이하(약 30층 내외)가 되도록 층고계획(25층 이하)을 수립하였음 -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환경영향평가시 대기오염물질 최대착지농도 지점에서의 저감후 예측농도가 기준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를 제시하였음	반영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 및 조치결과	비고
나. 대기 질 및악취	○ 운영 시 본 사업으로 인한 NO₂ 1시간 영향 예측 결과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235쪽)하며, 인근 개발사업에 대하여 NO₂ 1시간 누적영향평가 시 더 큰 폭으로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바, 이를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연료사용계획 조정 등 강화된 NO₂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변경된 연료사용량에 대한 NO₂ 발생량 재산정 및 모델링 기상입력자료 업데이트 등을 토대로 영향예측한 결과, 전 지점에서 NO₂ 1시간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영
	○ 공사 시 경북도청이전신도시(1단계)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필요시 영향 예측 지점으로 추가하고, 비산먼지 관련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영향예상시설에 경북도청이전신도시(1단계) 주거시설을 추가하였고, 공사시 살수, 세륜세차시설, 방진시설 등 저감시설(C/R장 : 살수, 세륜세차시설, 방진덮개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저감시설의 적정가동여부를 검사하고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등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실시하겠음	반영
다.수질	○ 금회 사업시행에 따라 농업용 저수지 등 농업용 수리시설물의 사업지구 편입현황을 상세히 제시하고, 사업시행 전과 후의 수해면적 및 용수수요량의 변화, 하천수 취수량(양수량) 변화 등 농업용수와 관련된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체 시설의 운영계획 등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농업용 수리시설물 편입 현황, 사업시행 전·후 수해면적 및 용수수요량 변화 등 수문분석자료, 농업용수 대체시설 계획 등을 제시하였음	반영
	○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추가 반영 - 침사지와 인접한 하천(또는 농수로)을 수질조사지점으로 선정하고, 평가서의 수질조사와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사 중 부지정지, 우기 시 등을 고려하여 최소 1년 이상은 위의 지점에 대한 수질(BOD, COD, TOC, SS, T-N, T-P 등)과 수량을 월 1회 이상 측정·분석	○ 공사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가시 현황조사지점 및 임시침사지 설치 위치를 고려한 하천을 수질조사지점으로 선정하였으며, 공사시 최초 1년은 월1회 이상 측정·분석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 수질조사위치도(그림 6.3.1-1, 284쪽)에서 하천(또는 농수로)과 수질 측정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지역 주변 수계도(등고선 제외)에 하천의 물흐름방향, 침사지 또는 저류지 인접 하천등을 수질 측정지점과 함께 표시하여 수질조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수질조사위치도에 물흐름 방향 등을 표시하였음	반영
라.토지이용	○ 본 개발기본계획 수립 이후 공동주택 각 공구별로 실시계획 및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회 토지이용계획은 사업지구 전체 계획인구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블록별 개발밀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개별 공구별로 과도한 개발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는 바, - 공동주택 블록별 개발밀도, 층고 등의 계획을 수립·제시하여 향후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공동주택 각 공구별 개발사업 추진시 개발밀도, 층고 등 블록별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 및 조치결과	비고
라.토지이용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공기순환 지하로 인한 대기오염과 도시열섬현상의 악화를 피할 수 있도록 바람길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녹지축, 통경축 형성을 통한 바람길 확보하고, 도시열섬방지를 위해 녹지공간 확보, 투수성 포장재 사용 등 친환경경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	반영
	공원 및 녹지계획의 경우 1단계 개발지역, 네트워크 체계도 등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공원 및 녹지계획은 1단계 계획 및 그린 네트워크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공원의 형평성 있는 배치를 위해 공동주택 A-3BL 주변에 추가적인 어린이공원 배치계획을 검토하여야 함.	당초A-3BL(현 A-5BL) -A-5BL인접지역 소공원 추가 반영	반영
	사업부지 동측의 테마파크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 제시하여야 함.	향후 사업자 선정 후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마.지형·지질	사업지구 내에 문수지맥이 위치하고 있으나 해당 지형축의 현황, 단절의 정도, 이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상세히 제시되지 않은 바,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사업에서 발생된 문수지맥의 단절을 포함하여 본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영향을 검토하여 지형축의 단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경북도청이전신도시(1단계)를 통과하는 문수지맥은 당초 사업시행 이전부터 농경지 등으로 지맥 단절이 발생되어 있으며, 경북도청이전신도시(1단계) 계획수립시 문수지맥 주변으로 분포하는 구릉성 임야지역 등을 공원으로 계획하여 지맥 및 녹지축을 최대한 보전토록 계획하였음	반영
바.소음·진동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소음·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정온시설(고층 주거시설, 문화재, 사육시설, 교육시설, 저장 시설, 관로, 정밀기기 운영시설 등) 분포현황을 도면(지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평면도 및 단면도)과 표를 사용하여 명확히 표기하여야 함.	소음·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정온시설에 대한 분포현황을 도면(평면도, 단면도 등)과 표로 제시하였음	반영
	-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을 대상으로 발파 시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 -발파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의 현황(종류, 이격거리 등) 명시 -주거시설에 대한 발파진동속도 환경목표기준을 문헌자료에 근거하여 설정(0.3kine, 459쪽)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정온시설의 상태(노후정도 등)를 고려한 환경목표기준 설정 -발파 시 사육시설에 대한 소음·진동 환경목표기준(발파진동속도 포함)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최신 조정사례를 근거로 설정(근거자료 명기)	- 발파에 따른 정온시설의 소음·진동 영향을 평가할 계획임 -발파구간 정온시설 현황(종류, 이격거리 등) 제시하였음 -발파 시 축사시설 진동속도 환경목표기준 0.02kine으로 적용 발파 TYPE 설정 제시함 -사육시설에 대한 발파소음·진동의 환경목표기준을 최신 조정사례를 근거로 설정하였음	반영 반영 반영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 및 조치결과	비고
바.소음·진동	○사업지구 내 정온시설(공동주택, 학교)에 대한 도로소음 영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 -목표연도까지 서비스 수준에 따른 연도별/구간별/시간대(24시간)별 교통량 및 속도 등의 정보를 교통관련 전문가를 통해 산출(소속 및 참여자 명기) -상기 자료를 근거로 구간별 및 시간대별 소음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사업지구 내 정온시설에 대한 도로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안(건축선 이격거리 확보, 완충녹지 조성, 상업시설 등의 전면 배치, 층고 조정 등)별 소음저감효과 검토 -도로소음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계획(485쪽)하고 있는 저소음포장은 이물질에 의한 공극의 막힘 등으로 저감효과가 감소될 수 있어 적극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되는 대책이므로 구체적인 관리계획(저감효과의 검증, 모니터링 계획, 유지관리 책임기관) 수립	○도로소음 영향예측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교통영향평가, 경북도청이전신도시, 2017. 2” 교통량을 이용하고, 교통관련 전문가를 제시하였음 -교통량 자료를 근거로 구간별 및 시간대별 소음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교통소음 영향 최소화를 위한 도로변 저소음포장, 건축선 추가이격을 반영하였음 -저소음포장공법 적용시 구체적인 관리계획(저감효과 검증, 모니터링 계획, 유지관리 책임기관 등)을 수립하여 제시함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운영 시 소음영향이 발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저소음포장 및 직각배치 등의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직각배치 방향이 모순되는 구간이 발생하므로 충분한 규모의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등 추가 저감대책을 검토하여야 함. ※교차로 1~2 및 5~6구간의 직각배치는 동서방향이나 교차로 1~10 및 4~8구간의 직각배치는 남북방향으로 모순됨(469쪽, 486~489쪽)	○소음영향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소음초과지역에 대한 저소음 포장, 건축선 추가이격을 저감방안으로 수립하여 제시함	반영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조사지점 선정근거 명기(예측결과가 환경목표기준에 하향 근접하여 저감대책에서 제외된 지역,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나 환경목표기준에 근접하는 지역, 발파 및 항타와 같이 충격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지역, 신뢰성이 부족한 보정계수가 사용된 지역, 작업시간 제한 등 공사장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 발파와 같이 예측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공종이 시행되는 지역, 저감효과의 신뢰성 확보가 요구되는 지역 등) -조사 시기 및 빈도 설정 근거 명기(해당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고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 -조사 기간 설정 근거 명기(실측값이 안정적으로 환경목표기준을 만족하는 때)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시 조사 지점, 조사시기, 조사기간에 대한 설정근거를 명시하였음	반영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 및 조치결과	비고
사.위탁·경관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영향을 면밀히 예측하여 새롭게 창출되는 도시형 경관과 기존의 1단계 사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주요 조망점(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가로 경관계획(이식수목 최대한 활용 등)을 제시하는 등 경관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 수립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조망점을 중심으로 유형별로 분류하여 가로경관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식수목은 녹지(경관녹지)에 최대한 활용하여 실효성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반영
아.기타	○현재 경북도청 신도시 주택시장은 수요에 비해 과도한 공급과 정주 여건이 열악하여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추가로 2단계 건설을 통해 29,689호의 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바, 2단계 건설에 앞서 계획인구의 적절성을 재평가하여야 함.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4107&yy=2016 참조 -2020년 안동시 도시기본계획 생활권 계획인구와 2015년 신도시가 포함된 생활권 인구에 현재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택지개발의 계획인구를 추가하여 비교 -안동시와 예천군의 산업단지 및 상업시설 등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 파악 -교육시설, 공원시설, 녹지공간, 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	○본 신도시는 10만 인구 수용으로 계획된 도시로 사업지구의 계획인구의 적정성 검토 제시하고, 기존 2단계에추가 편입된 주거는 2단계에부지조성을 하고 3단계에 11,690호(29,223인)을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함 -또한, 1단계 분양율조사, 유사사례조사 등을 통해 검토 및 신도시활성화 방안등을 제시하여 주택의과잉공급을 방지할 계획임 -상위 및 관련계획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계획인구 적절성 평가하였음 -안동시와 예천군의 산업단지 등 인구유입 예상 개발계획 파악 및 검토하였음 -계획인구 검토를 통하여 교육시설, 공원시설, 녹지공간, 문화시설 등 구체적인 시설계획 수립하였음	반영 반영 반영

2.2.3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의견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 및 조치결과	비고
□ 총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6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31호, 2016.7.8.) 제33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협의의견을 사업승인 시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본 사업시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책을 강구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아울러, 공사 시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환경분야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분석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승인 시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 사업시행시 환경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되도록 환경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며,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 ○ 공사 및 운영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추가적인 영향 발생시 원인을 분석하고 별도의 대책을 추가로 수립·시행하겠음	—
□ 항목 별 검토의견 대기환경 분야	○ 공사시 투입되는 장비로 인한 비산먼지 및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평가서(초안)에 제시된 저감방안(주기적 살수, 차속의 제한, 비산방지망 설치, 공사장비 분산 투입 등)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시행하여야 함 ○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사 시 공회전 금지 및 운영시 신·재생에너지 사용, 저탄소 자재 사용 등을 할 것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저감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검사하고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등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실시하겠음 ○ 공회전 금지,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계획임	반영 반영
토지환경 분야	○ 가능한 절·성토작업은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배수구역 주위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을 방지할 것 ○ 공사장비에 의해 발생하는 폐유의 부적정 처리로 인근지역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 수질편과 연계하여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계획을 수립함 ○ 공사시 발생 폐유 처리계획 수립함 -폐유저장시설 설치 및 발생폐유 적법관리	반영 반영
자연생태 환경분야	○ 현지조사 시 확인된 법정 보호종인 수달, 삵, 황조롱이, 새호리기 등이 등이 조사되었으므로 공사 시행 전·후 철저한 환경영향 조사가 요구되며, 야간공사 지양, 공사 시 토사의 하천유입을 최대한 방지하는 등 주변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 현지조사시 확인된 법정보호종에 대한 생태특성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수립하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함	반영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 및 조치결과	비고
	-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 지장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등은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 처리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이 유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 - 사업지역 인근에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작업시간 조정,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적정 조치하고 예측하지 못한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발생될 경우 즉각적 대책 마련할 것 - 건설장비 가동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작업 시 미리 주민들에게 공지하고 적정 공법을 선택·적용할 것 - 사업부지내 건축물 배치 및 조경 식재계획 수립시 인접한 농경지에 미치는 일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폐유보관시설 설치 및 처리계획 수립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처리계획 수립 - 공사시 사업지역 주변의 정온시설을 파악하고 영향예측을 통하여 작업시간 조정, 가설방음판넬 수립 등 적극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함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하였음 -속도제한,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지역주민 사전공지, 가설방음판넬 설치, 장비분산 투입 등 - 건축물 배치는 추후 시공사 선정시 안동시 및 예천군의 건축조례 및 관련법규에 준하여 적절한 저감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조피해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배치할 계획임	- 반영 - 반영 - 반영 - 반영
기타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이므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사업내용 등을 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사업 승인 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을 통보할 예정임	-

2.2.4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의견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 및 조치결과	비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신고 대상 사업에 해당 될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득하여야 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동 사업추진 관련 최종배출부하량 할당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및 예천군 수질 오염총량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해당될 경우, 공사 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될 경우, 공사시행 전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비점오염원 신고 대상 사업으로 관련법에 따라 신고를 득하겠음 (일부반영)현재 수질오염총량을 검토하여 안동시 및 예천군과 최종배출부하량 할당과 관련하여 협의 하였으며, 할당공문 제시함 - 공사 착공 전 관련법에 따라 발생사업 신고절차를 이행하겠음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공사 대상에 해당시 신고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 - 반영 - -

2.2.5 경상북도 산림자원과 의견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 및 조치결과	비고
지형지질	○문수지맥 보전 : 사업지구 내 위치한 문수지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대책 강구	○사업지구 내 문수지맥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임야지역 능선 부분 및 주변지역을 근린공원 계획하여 최대한 보전토록 하였음	미반영
	○재해방지시설 사전설치 : 산지전용지 절·성토면의 안정각 유지와 발생한 잔토의 즉시 처리, 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 시설·옹벽·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주거지 및 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절·성토로 인한 인근 주거지 및 농경지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토사유출방지대책, 사면처리계획 등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반영
	○경관보전 : 전용으로 인한 경관저해가 없도록 상단부 절·성토지 등에 대한 우선 복구를 시행하여 대면적의 산림이 일시에 전용되지 않는 자연친화적인 복구계획 수립	○절·성토로 인한 경관저해를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산지전용지 복구 : 산지관리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산지복구 실시	○관련법에 따른 산지전용지 복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산지복구를 실시토록 하겠음	-
식물상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주변 산림과 단절 및 이질감이 없도록 향토수종인 훼손수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녹지조성시 활용토록 할 계획임	반영
	○이식 수목은 사업지구 내 사면식재 및 녹지조성에 활용	○이식 수목은 사업지구 내 사면식재 및 녹지조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임	반영
	○소나무재선충병 :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방 및 구제와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업부지 내 생립하고 있는 소나무류는 벌채 또는 굴취하여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 만일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동시 및 예천군(산림부서)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은 후 반출토록 하여야 함	○훼손수목 중 외부로 반출되는 수목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 후 반출토록 할 계획임	반영
	○원형존치 산림 및 녹지 관리계획 수립 : 원형존치 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자연경관보전 등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등 철저하게 보호·관리하고, 조성녹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향토수종과 우리꽃 등 자생식물로 식재되도록 관리계획 수립	○조성녹지의 식재시 향토수종과 자생식물을 최대한 활용한 녹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임	반영
기타	○산불취약시기 산불감시원 배치 및 공사인부를 대상으로 산불예방 교육 실시	○공사인부들 교육 및 관리·감독을 통하여 산불예방 교육 실시하겠음	-

2.2.6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의견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 및 조치결과	비고
	1. 신도시조성과-4506(2016.7.19)호와 관련입니다.	-	-
	2. 위호와 관련 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2단계) 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9093호(2016.7.15)로 협의한 개발계획 변경(6차) 검토의견과 같이 토지이용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변경·결정된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되어야 하고,	○ 관련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임	-
	3. 향후 실시계획 승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포함되는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적합하게 작성·협의되어야 합니다.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임	-

2.2.7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의견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 및 조치결과	비고
	○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 2단계 추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우리부서는 의견제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2.2.8 경상북도 농촌개발과 의견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 및 조치결과	비고
	1) 동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생산기반시설(농로, 구거 등) 국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는 용도폐지하여 유상매입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토지는 보상완료	반영
	2) 또한, 동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생산기반시설(농로, 구거 등) 국유지가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을시 사업시행에 따른 무상귀속 등 협의에 대해서는 사업인가시에 본 협의절차와는 별도로 사업인가에 따른 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무상귀속 등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협의할 예정임	-

2.2.9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의견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 및 조치결과	비고
	○문화재청 발굴제도과-9355(2010.7.1)호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부지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로 회신된 문화재 보존대책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행정기관 의견 반영	—
	가.사업지역 내에 시·도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현상 변경 허가를 받은 후, 아래 “나~바” 항목을 이행토록 함	-관련 규정 준수	—
	나.사업부지내 유물산포지 등에서 발굴조사 시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수반되거나 조사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상대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중요문화재 분포지역은 가능한 현지에 보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 권고함).	-발굴조사 결과 반영 및 관련 규정 준수	—
	다.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시굴조사 455,050㎡, 표본조사 1,027,424㎡ : 대상범위는 지표조사보고서 및 붙임 확인서 참조)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고묘에 대하여는 무연고묘에 해당되는 경우 발굴조사토록 하며, 유연고묘는 조사에서 제외토록 함. 지정문화재를 이전보존할 경우 기존 보존 대상건물의 터에 대하여도 문화재보호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함	-추진현황 : 급회 2단계구간 표본·시굴·발굴조사 완료 및 진행중이고, 일부유적은 발굴로 전환됨 -관련 규정 준수	반영
	라.조사결과 확인된 사업지역 내 역사분야, 사회·민속분야 및 고건축분야에 대하여는 조사결과에 따라 이행토록 함	-관련 규정 준수	—
	마.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예정부지와 인접한 문화재 및 그 주변경관과 유물산포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절차를 마련한 후 시행하여야 함.	-관련 규정 준수	—
	바.사업대상 구역이 추가 또는 면적의 변경 등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야 함.	-관련 규정 준수	—